

문서관리번호	2026-S-08
최초제정일	2026.02.01
최종수정일	2026.02.01
문서관리부서	환경안전팀

유성기업 지역사회 정책

2026.02.01

페이지 1 | 4



1. 개요

가. 재정목적

- 유성기업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해당 정책을 선언한다.
- 본 정책은 유성기업 인권헌장과 환경경영정책, 안전보건경영정책, 생물다양성 보호정책, 산림파괴 예방정책,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에서 명시된 지역사회 관련 지침의 근간이 되며, 상호연계 된 활동이 될 수 있다.

나. 지역사회 정의

-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 및 가치사슬로 인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개인 혹은 집단
-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실제적 영향뿐 아니라, 잠재적 영향을 받는 원주민(Indigenous People) 도 포함

2. 정책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유성기업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합작투자사, 협력사 등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본 정책의 이행지침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장한다. 유성기업은 본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추진하되, 관련 현지 법규 및 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3. 이행 지침

유성기업은 이행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추진한다.

가. 지역사회 영향 평가

유성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식별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경제·환경·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 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69호 또는 유엔 선주민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기하여 필요에 따라 정책 및 프로그램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

지역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소통 채널과 절차를 마련하여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다. 협력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유성기업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유성기업의 사업모델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성과 및 계획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라.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

유성기업은 지역사회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시,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및 경제·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4. 정책 운영

유성기업은 정책운동을 위한 거버넌스와 실행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가. 거버넌스

유성기업은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한다.

나. 이행

유성기업은 본사와 사업장에 본 정책을 실행하는 조직을 두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의 주요역할은 이행지침에 따른 업무이며, 그 외 관련 업무는 지역사회로부터의 고충 접수와 처리, 교육 등 사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이다.